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마용사 및 위생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 》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17호)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24호)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04호)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48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6
1. 이·미용사 및 위생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제공 요청(강대식의원안) ...	6
2. 공공목욕탕 설치(김선민의원안)	14
3. 숙박업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 신고 등(김종양의원안)	23
4. 숙박요금 신고 의무화 등(이수진의원안)	33
※ 참고자료: 기관 간 정보공유 표준입법모델	53

I. 개요

1.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801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대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4. 1.

(3) 회 부 일 : 2026. 4.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이·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미용사 또는 위생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6항 및 제6조의2제11항·제12항 신설).

2.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832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4. 14.

(3) 회 부 일 : 2026. 4. 1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에서 목욕은 단순히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는 위생 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최근 에너지 가격의 급등, 인건비 상승 및 고물가 여파로 인해 민간 목욕장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목욕탕 폐업이 속출하고 있음.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나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어촌 및 구도심 지역의 경우, 민간 목욕탕의 부재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지역 주민의 위생 기본권 침해 문제로 직결되고 있음. 자택 내 목욕 시설이 미비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그리고 대중목욕탕을 유일한 사랑방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해 온 어르신들에게 목욕탕의 실종은 사회적 고립과 보건 위생의 사각지대를 의미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이른바 작은 목욕탕이나 공공 목욕 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행법은 주로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규제와 지도·감독에 치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욕 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공공목욕탕의 설치와 운영에는 막대한 초기 건립비와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므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목욕탕 설치·운영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공중위생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목욕 시설이 전무한 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 살리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3.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950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6. 25.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면서 숙박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의 부재는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당국이 투숙객 인원을 파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4.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2048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8. 6.

(3) 회 부 일 : 2026. 8.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수기·연휴 및 대규모 행사 등 기간에 바가지 숙박요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등으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숙박요금의 시기별 운영에 대한 신고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취소 금지 등에 관한 규율이 명확하지 않아 예방·단속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일방 취소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II. 검토의견

1. 이·미용사 및 위생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제공 요청(강대식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이용사·미용사 또는 위생사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제6항 및 제6조의 2제11항·제1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⑥ 제5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u>
<u><신설></u>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 ⑩ (생략) <u><신설></u> <u><신설></u>	<u>및 제공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u>⑪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⑫ 제1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 대상기관 및 제공방법 등 개인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 사항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결격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제6조제2항)>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5.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위생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제6조의2제7항)>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자 등과 관련하여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은 각각 이·미용사 면허 신청서와 위생사 면허증 발급신청서에 의사 또는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성년후견인이나 범죄경력 등에 관한 정보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¹⁾에 근거한 행

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됨.

- 따라서, 현행법상 이·미용사와 위생사 면허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각각 시장·군수·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별로 면허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진단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됨.

< 이·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및 확인방법 >

구분	결격사유	근거법률	확인방법
이·미용사 면허	피성년후견인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1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2호	의사 또는 전문의 진단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 (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환자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의사 진단서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4호	의사 진단서
	자격 취소, 이종 면허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제5호	서울행정시스템 ²⁾
위생사 면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7항제1호	의사 또는 전문의 진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7항제2호	의사 진단서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7항제3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1)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2) '서울행정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구축·보급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민원·행정업무 처리하는 데 활용하는 통합 행정업무 전산시스템임.

□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으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할 수 있음.³⁾

○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89조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용사 또는 위생사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 10. (생략)
- ③ ~ ⑤ (생략)

4)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의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통지와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제88조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개정안은 이·미용사 면허를 발급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위생사 면허를 발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으로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면허 발급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진단서) 외에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직접 해당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증 발급 전에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진단서)의 진위·누락 여부와 조작 가능성 등에 대한 교차확인이 가능해져 결격사유 확인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적격자에게 면허가 발급되어 사후에 취소되는 사례를 줄이고 면허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같이 결격사유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이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법」⁵⁾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처리

5)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중략)

목적에 명확히 하고,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더욱이 현행법상 결격사유 관련 정보는 건강 및 범죄경력 등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민감정보⁶⁾에 해당함.

○ 따라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관련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 기관들 사이에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특례를 규정할 공익적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을 입법화하는 경우에도 개정안의 내용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⁷⁾의 상당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및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등을 법률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4. (생략)

7) 관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두 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라고 보고 있음(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 간 정보 제공에 관하여 “요청기관, 이용목적, 요청정보,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요청정보가 다수일 경우는 해당 정보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하는 표준입법모델⁸⁾을 제시한 바 있음(<참고 1 참조>).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재 면허 신청자로부터 정신질환, 감염병, 마약류 중독 관련 의사 진단서를 제출받아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있고, 그 외 면허취소, 피성년후견인 등 결격사유 정보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조회 가능하여 개정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8) 기관 간 정보공유 표준입법모델은 기존에는 부처 간 수집 목적 외 사용 및 정보 제공 금지 조항으로 인해 협업이 제한되었으나, 정보공유 근거 마련 시 부처 간 해석 이견을 방지하고, 명확한 조문 형태를 제시하여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 요청 가능 기관, 제공 가능 정보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 의무, 정보 활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신속한 정보공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됨.

2. 공공목욕탕 설치(김선민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위생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공공목욕탕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2(공공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 주민의 위생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목욕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목욕탕의 설치 기준, 이용 대상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공공

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검토 사항

- 최근 5년간 지역별·연도별 목욕장업 신고 현황을 보면 2025년에 신고된 목욕장업은 총 5,668개소로 2021년(6,286개소) 기준 11.7% 감소하였고, 2000년(9,950개소) 기준으로는 43.0%가 감소하였음.

< 목욕장업 신고 현황 >

시도	200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9,950	6,286	6,025	5,860	5,737	5,668
서울	2,075	773	704	687	677	668
부산	1,308	769	736	698	670	651
대구	560	272	257	248	235	236
인천	478	220	207	212	205	209
광주	342	189	176	169	164	161
대전	256	112	101	95	89	88
울산	271	187	175	169	169	166
세종	-	16	16	19	18	18
경기	1,325	795	770	745	733	731
강원	336	299	292	286	294	289
충북	271	174	165	160	156	156
충남	287	237	231	225	225	227
전북	349	314	313	307	298	294
전남	411	412	406	404	404	406
경북	600	522	503	478	468	459
경남	925	839	821	805	781	763
제주	156	156	152	153	151	146

자료: 보건복지부 및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 재구성

- 이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가정 내 목욕문화가 일반화되고 헬스장, 사우나, 찜질방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목욕탕 수요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나, 목욕장업 수의 지속적인 감소는 단순한 업종의 축소를 넘어 공중위생과 복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 먼저 고령자,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 정기적인 위생관리가 어려워 기본적인 보건·위생권이 저해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용 요금이 비싼 대형 사우나나 찜질방 등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므로 가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더욱이 고령층에게 목욕은 혈액순환 촉진이나 근골격계 통증 완화 등 일상적인 건강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이들에게 동네 목욕탕은 단순히 씻는 공간을 넘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공간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 폐업은 고령층의 건강유지 및 사회적 교류를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인프라의 약화로 인식될 수 있음.
- 또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등 대체 시설을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타 지역으로의 원정 목욕을 위한 이동 거리 자체가 늘어나게 되어 지역 주민의 이동권 제약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목욕이 ‘큰일’이 되어버리는 목욕 사막화 현상을 야기하여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할 소지가 있음.
- 이에 서울시의 동행목욕 사업, 전라북도의 작은 목욕탕, 강원도의 행복목욕탕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등에 근거하여 무료 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수준의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목욕탕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공공목욕탕 사업 예시 >

구분	서울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사업명	동행 목욕	구립 목욕탕	작은 목욕탕	행복목욕탕
주요 내용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와 함께 목욕시설 방문 및 이동 지원	어르신 복지센터나 주민공동체 시설 내 부속시설	소규모 목욕시설을 마을 단위로 설치 (남녀 격일제)	폐업 목욕탕 활용 또는 주민센터 등 기존 공공건물의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업 성격	바우처(이용권)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지자체 보조
사업 형태	방문형(이동·통행 서비스)	공공시설 직접 또는 위탁운영	공공시설 직접 또는 위탁운영	공공시설 직접 또는 위탁운영
운영 개소수	8개소	2개소 (금천구)	50개소	18개소
이용 대상	거동 불편 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	관내 주민	해당 읍·면 지역 주민	인근 지역 주민
이용 요금	무료 (민간기업 (한미약품) 후원)	노인·아이 4,000원 일반 6,000원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1,000~2,000원 일반 3,000원	노인·취약계층 1,000~3,000원 일반 3,000~5,000원
지원 근거	자체 조례 (「서울특별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조례」 등)	자체 조례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자체 조례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지역 주민이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공공목욕탕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과의 체계 정합성 등의 측면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중위생영업의 위생 수준 향상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시설 및 설비 기준, 보고 및 출입·검사,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영업의 제한, 영업소 폐쇄와 같은 행정제재 처분 등 규제 중심의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개정안에 따른 공공목욕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일종의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민간의 자유 영업을 보장하면서 최소한의 위생·안전규제를 설정하려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 및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또한, 현행법에 따라 목욕장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생관리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욕장업에 대한 지도·감독 주체가 되는바, 개정안에 따른 공공목욕탕을 목욕장업으로 볼 경우 목욕장업에 대한 지도·감독 주체와 공공목욕탕 설치·운영 주체가 동일한 자기감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목욕장업으로 보지 않아 시설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달리 적용할 경우 민간 목욕장업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게 됨.

- 더욱이 공중위생영업에는 목욕장업뿐만 아니라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이 포함되는바, 개정안과 같이 공공목욕탕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타 공중위생영업에 대해서도 업종별 공공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고 이를 수용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의 법적 성격이 더욱 모호해질 우려가 있음.

○ 추가적으로 민간 목욕장업과의 경쟁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정안에 따른 공공목욕탕을 지역 주민이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경우 민간 목욕장업 이용 수요를 일부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지역 내 소규모 민간 목욕장업의 경쟁력 저하로 인한 수익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민간 목욕장업의 기반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음.

○ 한편, 공공목욕탕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건축비, 설비비 등 초기비용뿐만 아니라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공공목욕탕의 이용 요금이 민간 목욕장업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공목욕탕 활성화를 통해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법체계 정합성과 민

간 목욕장업과의 불공정 경쟁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 중심 구조인 「공중위생관리법」에 법적 근거를 두기보다는 정책 목적(일반 주민 복리 증진, 취약계층 건강관리, 전국 단위 정책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법」, 「노인복지법」, 「지역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복지 관련 법률에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생 취약지역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목욕 사막' 지역이나 인구 감소 지역 등으로 설치 범위를 한정하는 등 민간 영역과의 기능 중복 및 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위생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공중위생관리법」에 신설할 경우 업종에 대한 규제와 공공시설 설치지원 기능이 혼재되어 법체계상 기능 및 목적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부산광역시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대중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이며 공공목욕탕 운영 시 민간과의 충돌 및 예산의 비효율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 한국목욕업중앙회는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민간 목욕탕 운영을 어렵게 만들 것이며, 공공목욕탕과 민간목욕탕과의 경쟁 구도로 불공정 경쟁 문제가 발생하며 초기건립비 및 유지관리비를 고려할 때 재정부담이 커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임.

3. 숙박업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 신고 등(김종양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 관련 사항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에만 해당한다]

3. 교육수료증(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

② ~ ⑥ (생 략)	<u>에 관한 자료(숙박업을 신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u> <u>7.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 청서</u> ② ~ ⑥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 사항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 사용 권리 확보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만 해당한다)

2. 교육수료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삭제

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삭제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3호·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건축물대장**(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③~⑤ (생략)

○ 동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첨부 서류 및 확인을 통해 숙박업의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의 확인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먼저, 신고서 첨부 서류 중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의 기재 사항의 경우 업소명, 위치, 면적(m²), 영업설비 개요(평면도 포함) 등이 포함되나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은 법정 기재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⁹⁾와 같이 숙박업 신고 시 평면도와 객실 층별 설계도면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를 통해서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을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인 건축물 대장(지자체 관리)은 「건축법」 제38조¹⁰⁾에 따라 건축물의 소

9) 서울시 구로구는 숙박업의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평면도, 객실 층별 설계도면을 추가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보관·정비되는 것으로, 주요 기재 사항에는 연면적, 주용도, 건축물 현황(층별 구조, 용도, 면적)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숙박업소의 객실 수 확인은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수용 가능 인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법원등기소 관리)는 「부동산등기법」¹¹⁾에 따라 건물에 관한 등기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이고 등기기록은 건물의 표시사항 및 권리관계에 관한 표제부·갑구·을구¹²⁾로 구성되는바,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 등 숙박업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음.

○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르면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는 소화기를 영업장

10)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1) 「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12)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며,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도 기재되어 있음.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 ① (생략)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안의 구획마다 설치하여야 하는 등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 완료 후 이를 신고하면 소방서장이 완비증명서인 소방필증(소재지, 설비, 설비 수량 등 기재)을 발급하게 되는데, 동 특별법상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고시원업¹³⁾과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만 포함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은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영업신고 과정에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건축물대장 및 소방필증 등을 통하여 객실 수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여지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일반 숙박업소의 객실 수와 수용 가능 인원이 독립된 영업 신고사항으로 명확하게 관리된다고 보기 어려움.

□ 이에 개정안은 숙박업 신고 서류에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 에 관한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시장·군수·구청장이 숙박업소의 규모와 잠재적인 구조 대상 인원을 표준화된 형태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추후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지정 등을 통해 소방청장 등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3)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다만, 수용 가능 인원과 관련하여 객실별 면적, 침대 수 및 형태, 추가 침구 제공 여부, 영업자의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수용 가능 인원이 달라질 수 있는바, 명확한 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용 가능 인원이 객실별 정원의 합계인지, 침대·침구 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추가 입실 가능 인원을 포함해야 하는지 등이 불명확하여 업소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신고할 수 있으므로, 수용 가능 인원 산정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는 숙박시설, 특히 화재 사고에 취약한 캡슐형·도미토리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숙박시설의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출서류 전체를 법률로 직접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은 제출서류 및 서식 변경, 불필요한 서류 폐지 등 행정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고, 개정안 부칙¹⁴⁾을 통해 기존 영업자에게 전체 첨부서류를 갖추어 재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자와 지자체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며, 현재 소방 관계 법령에 따라 객실 규모 및 수용 인원 등에 따른 피난시설 등 안전관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고 사항 추가로 인한 영업자 및 지자체의 행정부담 증가 대비 안전관리에 대한 개정 실익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임.

14) 부칙 제2조(숙박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숙박업의 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소방청은 개정안은 체계적·효율적 숙박업 관리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숙박시설)로 규정되어 규모에 적합한 법정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관할 소방관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¹⁵⁾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제14조¹⁶⁾에 따른 건축 허가 동의 및 착공신고·완공검사 과정에서 숙박업의 객실 수와 수용 가능 인원¹⁷⁾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임.

□ 행정안전부는 숙박업소의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 정보의 공동이용은 근거법령, 시스템 운영 현황, 정보 저장방식(중앙집중·분산), 연계방식(실시간·배치) 등을 기관 간 검토 및 협의 이후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임.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야 한다.
(이하 생략)

1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7]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 문화체육관광부는 캡슐형 호텔, 2층식 침대 등과 같이 밀집 형태의 숙박시설은 다른 숙박시설보다 화재발생 시, 투숙객의 대피가 어렵고 소방시설이 작동하더라도 제대로 소화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소방당국의 구조나 진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숙박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 화재 시 인명 구조 등을 위해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외에 객실 내 침대 유형에 관한 자료도 추가하여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그 외 강원특별자치도는 객실 수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각 객실의 호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행정시스템¹⁸⁾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낮는데 비해 민원인의 불편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고, 인천광역시도 신고사항을 추가하는 경우 구체적인 서류의 종류나 공인된 서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8)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구축·보급한 '표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4. 숙박요금 신고 의무화 등(이수진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숙박업자로 하여금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게시 및 준수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와의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은 숙박업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숙박예약의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법률 제21098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3 및 제22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생략) <u><신설></u>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u>숙박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u> 1.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게시하며, 게시한 숙박요금을 준수할 것</u> 2.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u>

② ~ ⑧ (생략)

법률 제21098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신설>

법률 제21098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와의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하지 아니할 것

③ ~ ⑨ (현행 제2항부터 제8
항까지와 같음)

법률 제21098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3(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

예약 일방 취소에 대한 과징
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자
가 취소한 숙박 예약의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재
판매한 금액의 50배 이하의 범
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산정
및 부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098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
요금 신고 등의 의무를 준수

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 6. (생 략) ③ ~ ⑤ (생 략)	<u>하지 아니한 자</u> 1의2. 제4조제3항----- ----- ----- ----- ----- ---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 사항

□ 최근 지역축제, 국제행사, 성수기 등 기간에 숙박요금이 급격히 인상되거나, 이미 확정된 예약을 숙박업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동일 객실을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와 지역관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문제되고 있음.

○ 최근 3년(2023~202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6,224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2025년에는 전년 대비 38.7% 급증해 2,662건에 달했고, 전체의 약 21%는 여름휴가 성수기인 7~8월에 집중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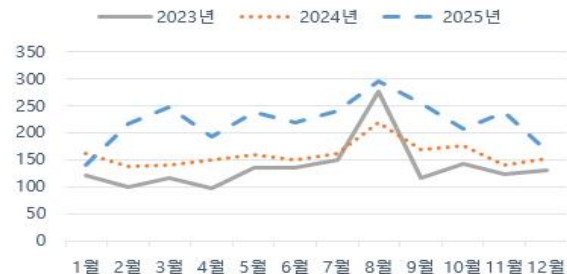
<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현황 >

단위: 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접수 건수	1,643	1,919	2,662	6,224
전년 대비 증가율	-	(16.8)	(38.7)	-

자료: 한국소비자원

< 월별 신청 추이 >



○ 구체적인 피해구제 신청사유는 ‘계약해제·해지’¹⁹⁾ 관련이 4,079건(6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²⁰⁾이 1,370건(22.0%), ‘표시·광고 미흡’²¹⁾이 511건(8.2%)임.

19) 질병, 천재지변,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소비자의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분쟁

20) 오버부킹 등으로 인한 객실 미제공, 위생·안전, 시설 노후, 계약 내용과 상이한 이행 등 숙박시설의 계약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분쟁

21) 인원 추가 요금, 객실 특이 사항 등 주요 계약 내용의 고지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 피해구제 신청이유별 현황 >

단위: 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 거부 포함)	1,155(70.3)	1,274(66.4)	1,650(62.0)	4,079(65.5)
환불 불가 상품 ('계약해제·해지' 내 비중)	464 (40.2)	541 (42.5)	801 (48.5)	1,806 (44.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342(20.8)	406(21.2)	622(23.4)	1,370(22.0)
표시광고	106(6.5)	160(8.3)	245(9.2)	511(8.2)
기타*	40(2.4)	79(4.1)	145(5.4)	264(4.3)
계	1,643(100.0)	1,919(100.0)	2,662(100.0)	6,224(100.0)

자료: 한국소비자원

- 한편, 피해구제 사건 중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해 거래한 경우가 4,531건(72.8%)으로 상당수의 소비자가 중개업체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거래방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숙박 전체	1,643	1,919	2,662	6,224
온라인 숙박플랫폼 (전체 대비)	1,162 (70.7)	1,437 (74.9)	1,932 (72.6)	4,531 (72.8)
그 외*	481 (29.3)	482 (25.1)	730 (27.4)	1,693 (27.2)

* 일반 전자상거래, 대면거래, 방문판매 등

자료: 한국소비자원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한 예약취소를 방지하며, 숙박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비자가 숙박요금과 거래조건을 사전에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으며,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확정된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를 예방하여 숙박예약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현행 법령상 숙박요금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숙박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①민사소송을 통한 사법적 해결²²⁾과 ②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절차²³⁾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개정안에 따른 숙박업자의 의무, 과징금 등이 도입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소비자분쟁조정에 의존하던 사후 구제를 행정제재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가격 신고 및 표시,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 및 규율체계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2)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숙박업자가 객실과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숙박요금 등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성립과 내용, 계약의 불이행 및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임.

23)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업무) ①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55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하 생략)

□ 먼저, 안 제4조제2항은 ①숙박요금의 신고 의무, ②숙박요금 게시 및 게시요금 준수 의무, ③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의 일방적 취소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각각의 의무는 규율 목적과 법적 성격이 일부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숙박요금 게시 및 게시요금 준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숙박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객실·침구 등의 청결, 욕실의 위생 및 수질 관리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²⁴⁾에서 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은 건전한 영업질서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숙박업자에게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2026년 7월 14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숙박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영업정지 5~20일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도 마련되었음.²⁵⁾

24)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 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따라서, 개정안의 숙박요금 게시 및 게시요금 준수 의무는 이미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숙박요금의 게시 및 준수 의무가 숙박업자의 핵심 준수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게시요금 초과수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숙박요금 신고제) 숙박요금 신고제는 숙박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가격을 사전에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격정보 신고·관리제도로, 직접적인 가격통제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격 설정 및 변경에 일정한 행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경제적 규제 성격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율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도입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시기별로 숙박요금을 파악하고, 신고요금과 실제 판매가격을 비교하여 과도한 요금 인상을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런데, 숙박요금 신고제는 숙박업소의 위생·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²⁵⁾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2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1. 숙박업자

라. 그 밖의 준수사항

(1)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接客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숙박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이하 "온라인 인터페이스"라 한다)를 숙박업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에도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 그럼에도 「공중위생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영업의 건전한 영업질서에 관한 사항도 일부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숙박요금 신고제를 이 법에 두는 것이 규율 체계상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존 영업질서 규율보다 규제의 범위와 강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법률의 목적 및 규율 범위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숙박요금 신고제를 도입하더라도 숙박요금은 숙박일, 예약시점, 객실 유형 및 온라인플랫폼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므로 신고 대상과 변경신고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을 것임.²⁷⁾

○ (숙박예약의 일방적 취소 금지) 동 사항도 「공중위생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율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예약취소를 방지할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

- 숙박예약이 성립하면 숙박업자는 약정한 날짜에 객실과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그럼에도 정

26)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7) 모든 판매가격을 신고하게 하면 숙박업자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대표가격이나 최고가격만 신고하게 하면 실제 소비자 보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는 이미 성립한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의 문제에 해당함.

- 그러한 점에서 숙박예약의 일방적 취소 금지는 사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전환하여 제재하는 것이므로, 동 의무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공법적 규제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와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적 계약관계에 대한 행정적 개입이 적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개별 법률인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정안에 따른 요금 신고제 등의 규정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동 법률들은 원칙적으로 특정 업종이 아니라 여러 거래 분야에 공통되는 소비자 권리, 거래조건, 표시·광고 및 온라인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이들 법률에 숙박업만을 대상으로 한 요금 신고제 등을 규정하여 다른 업종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례를 두는 것은 규율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규율 특성 >

법률	주된 규율 방식	적용 범위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 권리, 국가·사업자의 책무, 피해구제의 기본원칙	소비자거래 전반
「약관법」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무효·사용 금지	약관을 사용하는 거래 전반
「표시·광고법」	거짓·기만적 표시·광고 금지 및 중요 정보 공개	상품·용역의 표시·광고 전반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거래 정보 제공, 청약철회, 공급환급 및 금지행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전반

○ 따라서 숙박예약의 일방적 취소 금지의무를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하는 것은 해당 규제의 입법 필요성과 실효성, 현행 「공중위생관리법」과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 관련 개별 법률의 목적 및 규율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과징금) 개정안 제4조의3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을 일방 취소하고 숙박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한 경우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숙박예약의 일방적 취소 금지의무 도입을 전제로 동 과징금의 도입 필요성 및 부과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살펴보면, 동 과징금은 재판매 금액을 산정기초로 한다는 점에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이 있으나, 그 상한이 재판매금액의 50배에 이르러 실제 취득이익을 크게 초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부당이득 환수보다 위반행위의 억제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재판매 행위는 숙박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고, 위반행위로 얻는 이익이 민사상 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손해배상이나 소비자분쟁조정만으로 이를 충분히 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상 금전제재를 도입하여 사법적 피해구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분쟁조정 및 민사소송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후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사후적 구제 수단인 반면,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숙박업자의 위반 유인을 사전에 억제하고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과징금 도입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동 과징금과 유사한 입법례로는 2026년 2월 27일에 개정되어 동년 8월 28일부터 각각 시행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음.
 - 「공연법」 제4조의4와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는 각각 입장권등을 부정판매²⁸⁾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률들의 시행령은 입장권 판매금액과 판매매수를 고려하여 판매금액의 2배부터 50배까지 차등부과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8)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입장권 부정판매와 숙박예약 취소 후 고가 재판매는 모두 당초 가격과 재판매가격의 차액을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취득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이러한 입법례는 개정안의 과징금 상한을 설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와 제재 수준 사이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연법」 제4조의4²⁹⁾와 같이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약의 성립, 숙박업자의 일방적 취소, 정당한 취소사유의 부존재, 가격인상을 통한 재판매 등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판매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해당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³⁰⁾

29) 「공연법」

제4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30) 「공연법」

제4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과태료) 개정안 제22조제2항제1호는 숙박요금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의 벌칙 체계를 보면, 먼저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공중위생영업자별 위생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³¹⁾에서 그 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과 함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4조제7항의 준수사항 중 건전한 영업질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0조제3항제3호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외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짐.³²⁾

- 이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요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전한 영업질서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31)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중략)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2)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2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 이와 달리 개정안은 숙박요금 게시 및 게시요금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어서 살펴볼 시행규칙의 정비 여부에 따라 동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동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의 종류 및 적정 수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 및 개정안의 제재수단 비교 >

구분		형벌	과태료	행정처분 ³³⁾ (영업정지 등)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 ³⁴⁾ (현행법 제11조의2)	징벌적 (안 제4조의3)
숙박요금 게시 및 요금준수의무 미준수	현행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
	개정안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숙박요금 신고 미준수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숙박예약의 일방적 취소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일방적 취소 후 재판매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 또한, 안 제4조제2항에 따른 법정 의무사항 위반에 대하여 안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행법 제4조제7항과 그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 4 및

33)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단서 생략)

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4)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하 생략)

법 제20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경우 벌칙 체계의 정합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앞서 본 바와 같이 안 제4조제2항은 숙박업자에게 ①숙박요금
게시 및 게시요금 준수 의무, ②숙박요금 신고 의무, ③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의 일방적 취소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안 제
22조제2항제1호는 이들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중 숙박요금 게시 및 게시요금 준수 의무(①)는 현행법 제4
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숙박요금
신고 의무(②)와 일방적 예약 취소 금지 의무(③)는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의무임.
- 먼저, 숙박요금 게시 등의 의무를 안 제4조제2항에 따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현행 시행규칙 별표 4에도 제4조제7항에 따른
건전한 영업질서상 준수사항으로 동 의무를 현행과 같이 두면,
동일한 의무 위반이 안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인 동시에 현행법 제2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
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중복
및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행규칙에서 해당
의무의 근거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숙박요금 신고 의무와 일방적 예약 취소 금지 의무는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 제4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제3호와 직접 중복되는 문제는 없음.
- 그러나 개정안은 이들 의무(②·③)를 숙박요금 게시 및 게시요금 준수 의무(①)와 함께 건전한 숙박영업의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준수사항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안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현행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거나 정하게 될 다른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여전히 법 제20조제3항제3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바, 유사한 목적과 성질을 가진 준수사항의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와 형사벌로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현행법 제4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형사처벌 적용 범위와 안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동일한 성질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체계의 형평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추가적으로, 개정안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숙박요금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20조(벌칙)³⁵⁾ 및 법률 제21098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과태료)³⁶⁾에서 제4조 각 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이에 맞춰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부칙 적용례) 안 부칙 제2조는 과태료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음.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신설된 과태료 규정을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부칙 적용례는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대상 및 시기

35)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제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0조(벌칙)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6) 법률 제21098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신설되는 과태료 규정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 부칙 제2조와 같이 적용례를 두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안 제4조의3을 신설하여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한 숙박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은 「행정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재처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4조제37)항에 따라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과징금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행위 시의 법령등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음.
- 따라서 안 부칙 제2조와 같이 과태료의 적용례를 둔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도 함께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성수기·연휴 및 대규모 행사 기간

37)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에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요금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공중위생영업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또한, 숙박요금 사전 신고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등 이용객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성수기·지역축제 시 발생하는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취소 후 재판매에 대한 행정적 제재 근거와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투명한 요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숙박업중앙회는 이미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위반 차수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등의 제재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은 이중 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1

【참고1】	기관 간 정보공유 표준입법모델
--------------	-------------------------

자료: 법제처, 안전행정부('14년 9월)³⁸⁾

□ 요청기관, 이용목적, 요청정보,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요청정보가 다수일 경우는 해당 정보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한다.

- 법률에서부터 요청 정보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범위가 한
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야 한다.

□ 과세정보 요청 입안 사례

법률 00조 【자료제공의 요청】

- ① 국토교통부장관(요청기관)은 제00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
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이용목적)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요청정보): 세무관서의 장(대상기관)
 2. AAA: A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얻은 정보
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
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시행령 00조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 ① 법 제0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2. aaa

38) 법제처·안전행정부, 2014년 9월 5일. 보도자료: 법제처·안행부, 표준 입법모델로 협업 속도 낸다! - 기관
간 정보공유 가속화를 위해 표준 법령모델 마련 -